



| | | | | | |
|--|---|---|-----|---|------------------|
|  교육부 | | <h1>보도자료</h1> <p>2021. 2. 22.(월) 배포</p> | |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| |
| 보도일 | 2021. 2. 23.(화) 국무회의 시작 시(10:00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·방송·통신 2.23.(화) 국무회의 시작 시(10:00)부터 보도 가능 | | | | |
| 담당과 | 국립대학정책과 | 담당자 | 과장 | 이강국 | (☎ 044-203-6804) |
| | | | 사무관 | 민병성 | (☎ 044-203-6808) |
| | | | 주무관 | 이경용 | (☎ 044-203-6908) |

「국립학교 설치령」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
◆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통합되어 2021년 3월 1일 '경상국립대학교'로 출범

-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2월 23일(화), 국무회의에서 「국립학교 설치령」 개정안을 심의·의결했다고 밝혔다.
- 교육부는 지난해 두 대학의 자율적 통합신청(2020년 5월)에 따라 통폐합 심사를 거쳐 통폐합을 최종 승인(2020년 11월)하였고, 이를 바탕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.

【경상대학교-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통합 주요내용】

- 통합대학 교명 / 본부 : 경상국립대학교 / 경남 진주시
- 통폐합 시기 : 2021년 3월 1일(학사통합 2022년 3월)
- 행정조직 : 1총장 3부총장, 4처 1국 4본부, 14과 12행정실
- 학사조직 : 단과대학 20, 일반대학원 1, 특수대학원 11, 학부 19, 학과 88
- 입학정원 : 4,313명(경상대 3,138명, 경남과기대 1,175명(야간 17명 포함))
※ 입학정원 감축 없음
- 캠퍼스 특성화

| 구분 | 가좌캠퍼스 (교육연구혁신) | 칠암캠퍼스 (융합혁신) | 통영캠퍼스 (해양혁신) | 창원산학캠퍼스 (산학융합)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|
| 특성화 분야 | 항공우주, 생명과학, 나노신소재, 동물자원, 비즈니스융합 | 정보통신기술 융합, 의학생명, 건설환경기반시설 | 해양 정주형캠퍼스 (Residential College) | 기계융합공학 |

□ 「국립학교 설치령」 개정(안)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통합함(2021년 3월 1일)에 따라 통합 대학의 교명을 '경상국립대학교'로 변경하고, 대학 내 하부 행정조직의 설치 범위를 조정*하며, 학생과 공무원의 소속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를 마련한다.

* 행정본부 설치, 과·담당관(16개→14개), 행정실(13개→12개)

□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“이번 국립대학 통폐합은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특성화를 통해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, 동일지역(경남 진주시)에 위치한 두 대학의 자율적 통합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.”라고 말하며,

- “교육부도 양 대학이 마련한 통폐합 이행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행·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.”라고 밝혔다.

【붙임】 「국립학교 설치령」 일부개정령안

대통령령 제 호

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

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전단 중 “행정본부(강원대학교·경북대학교 및 전남대학교에 한정한다)”를 “행정본부(강원대학교·경북대학교·경상국립대학교 및 전남대학교로 한정한다)”로, “둔다”를 “보한다”로 한다.

제16조제6항 중 “기간중”을 “기간 중”으로, “경상대학교”를 “경상국립대학교”로, “대하여는”을 “대해서는”으로 한다.

별표 1 제1호 중 경남과학기술대학교란을 삭제하고, 같은 호의 학교명란 중 “경상대학교”를 “경상국립대학교”로 한다.

별표 5의 학교명란 중 “경상대학교”를 “경상국립대학교”로 한다.

별표 6 중 경남과학기술대학교란을 삭제하고, 같은 표 중 경상대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| | |
|---------|----|
| 경상국립대학교 | 14 |
|---------|----|

별표 8 중 경남과학기술대학교란을 삭제하고, 같은 표 중 경상대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| | |
|---------|----|
| 경상국립대학교 | 12 |
|---------|----|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학교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① 이 영 시행 당시 경상대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은 경상국립대학교의 해당 학과의 해당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.

② 이 영 시행 전에 경상대학교에 입학할 허가받은 사람은 경상국립대학교에 입학할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상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상국립대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도록 할 수 있다.

④ 이 영 시행 당시 경상대학교에 소속된 공무원은 경상국립대학교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.

제3조(폐지되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재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영 시행 당시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 및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학교에 입학한 허가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27년 2월 28일까지(건축학과의 경우 2028년 2월 29일까지) 같은 학교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상국립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서 졸업하도록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로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대학 또는 경상국립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편입학하려는 학교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④ 이 영 시행 당시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 소속된 공무원은 경상국립대학교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.

